

## 새생명 한인 교회 정관

### 전문

새생명 한인 교회는 1988년 2월 7일에 어바나 샴페인 지역 한인 유학생의 복음화를 위해 Korean New Life Free Methodist Church of Urbana 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10월 지역 복음화와 한인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독립교회로 전환하였다.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한 독립교회로서 다음과 같은 공동의 믿음을 고백한다.

-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이시며 우리의 스승과 모범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믿으며
-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룬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고 그 최종 권위에 순종하며, 명료성, 필요성, 충분성을 믿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과 영생을 믿습니다.
- 새생명교회의 성도로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공동체의 핵심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의 결단을 합니다.
  - 나는 새생명교회의 일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예배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성경적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 나는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힘쓸 것이며, 전문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우리 교회의 공식 명칭은 'New Life Korean Church of Champaign County'이며, 한국어로 '삼페인 새생명 한인 교회'로 부르고 약칭으로는 '새생명교회'로 부른다.

제 2 조 (소재지) 우리 교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2901 Watterson Ct., Champaign, IL 61822

제 3 조 (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
2. 지역사회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3.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4. 교회 안에서의 친교와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현하는 것
5. 지역사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것

## 제 2 장 교인

제 4 조 (자격)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 교회는 활동교인과 비활동교인의 구분을 두고 있다. 활동교인은 교회 등록 후 4 개월 이상이 지났으며, 새가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공동고백문에 동의하며,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다. 비활동교인은 그 외의 교인을 말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조 (책임)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 6 조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한다. 활동교인은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비활동교인은 모든 목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의 부서장과 구역장이 될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 제 3 장 교역자

#### 제 7 조 (담임목사)

##### 1. 직무

담임목사는 우리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목양, 심방, 성례식 집전, 목회행정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 2. 청빙

담임목사는 교인총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된다.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청빙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과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청빙위원회로부터 후보 추천이 완료되면 담임목사 청빙을 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에 전임(前任) 담임목사를 포함하지 않으며, 전임 담임목사를 제외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 3. 임기

(1)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이며, 매 7년의 임기 중 6년을 마치는 시점에 운영위원회에 연임 여부에 대한 의사를 알려야 한다.

(2) 담임목사가 운영위원회에 연임 의사를 알릴 경우 담임목사를 제외한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신임투표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임한다.

(3) 담임목사가 운영위원회에 연임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알릴 경우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후임 담임목사 청빙 및 사역의 이관에 협조한다.

(4) 담임목사가 연임이 확정된 후 해당 임기 7년차에 2개월의 유급 안식을 가질 수 있다.

##### 4. 신임투표

담임목사에 대한 교인 총회의 신임투표는 다음의 경우에 요구된다.

- (1) 새로이 청빙 받은 담임목사가 첫 7년의 임기 중 1년을 마치는 시점
- (2) 매 7년의 임기 중 6년을 마치는 시점에 제 7 조 제 3 항 제 (2) 목에 의거  
운영위원회로부터 신임투표 요청을 받은 경우

담임목사가 교인총회의 신임투표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그 담임목사는 즉시 퇴직하고, 교회는 2 개월의 사례에 해당하는 전별금을 드린다.

5. 사례

담임목사의 걱정된 사례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사례준칙을 만들어 운영한다.

**제 8 조 (부교역자)**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해 부교역자를 둘 수 있으며 (부목사, 전도사 등), 담임목사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부교역자의 임기는 1 년이며, 운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임기를 1 년 단위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청빙 조건)** 담임목사의 청빙 조건은 청빙시 청빙 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0 조 (정년)**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65 세로 하며, 본인의 의사와 교인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2 년씩 2 회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안식월)**

1. 담임목사는 매 7년의 임기 중 총 6년의 임기를 성실히 마치고 연임이 결정된 이후 해당 임기의 7년째 해에 2 개월의 유급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상황을 판단하여 유급 안식월을 최대 1 개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유급 안식월은 여러 차례에 나누어 사용할 수 없으며 7년째 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임목사의 안식월 중 대체 설교자의 섭외를 위하여 안식월 사용 일정을 최소 2 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제 11 조 제 1 항에 의한 유급 안식월은 담임목사의 시무기간으로 인정한다.
3. 임기 중 담임목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주어진 휴가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부재가 필요할 경우,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에 안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가 그 필요 여부를 논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안식월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급되는 안식월은 무급으로 하며, 매 7년의 임기마다 총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 11 조 제 3 항에 의거 휴가기간 외 주어진 무급 안식일의 최대 기간을 초과한 담임목사 부재 발생 시, 담임목사가 해당 임기를 성실히 마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제 11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할 경우 교인 총회의 허락을 득하여 적용한다.

#### 제 12 조 (해임 및 사직)

1. 담임목사는 임기 중이라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하 사임이라 한다) 그 직을 면한다.
2. 담임목사의 사임 시기는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결정하며,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후임 담임목사 청빙 및 사역 이관에 협조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안을 담임목사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교인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4. 활동교인 과반의 서명을 통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안을 교인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5. 담임목사 해임안이 교인 총회에 상정되고 교인 총회 참석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담임목사는 그 직을 면한다.
6. 임기 중 해임의 경우 전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임안 결의 즉시 직을 면한다.

### 제 4 장 역할

제 13 조 (편성) 우리 교회에는 교역자(목사와 전도사 등)외에 집사의 호칭과 구역장 및 각 부서장의 직책을 둔다.

제 14 조 (집사) 만 25 세 이상으로 우리교회에 등록된 지 4 개월이상 된 세례교인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사의 호칭을 부여한다.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성도는 그 호칭을 유지한다.

### 제 5 장 사역과 조직

제 15 조 (부서) 우리 교회는 전반적인 교회 활동과 사역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선교부: 국내 외 전도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교육부: 교회학교(주일학교, 유스) 및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청년부: 청년 사역(청년 모임의 조직, 활동,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양육부: 장년 성도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재정행정부: 교회 재정 및 사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7. 친교부: 교회 내와 교회 밖의 봉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8. 새가족부: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 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9. 시설관리부: 교회 건물과 부대시설 및 교회가 소유한 장비 등의 설치, 점검,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제 16 조 (부서의 개편) 부서의 신설, 폐지, 통합과 같은 부서의 개편은 제 15 조를 기본으로 교회 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행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

#### 제 17 조 (부서의 임원)

1. 부장은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교인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장은 활동교인 가운데서 선출한다.
3. 임기는 1 년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1 회 연임할 수 있다. 이후 임기를 위해서는 위의 1 번에 언급된 선출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4. 부장 외의 임원은 각 부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 제 18 조(자치회)

1. 교인들은 연령 혹은 목적에 따라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우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3.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치회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자치회의 해산은 권징 절차에 준한다.

## 제 6 장 구역

제 19 조 (구역) 교우들이 신앙 안에서 친교하며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고 돌볼 수 있도록 몇 개의 구역을 편성 운영한다. 구역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 하위구역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 20 조 (편성과 개편) 구역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다.

### 제 21 조 (구역임원)

1. 구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교인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구역장은 활동교인 가운데서 선출한다.
3. 임기는 1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후 임기를 위해서는 위의 1 번에 언급된 선출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4. 부 구역장, 총무 등 그 외의 임원은 각 구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 제 7 장 회의

### 제 22 조 (교인 총회)

1. 회원  
교인 총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18 세 이상의 활동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교인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 월 마지막 주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혹은 총회 회원 등록 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시일, 장소, 안건 등을 2 주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회  
교인총회의 사회는 담임목사가 맡는다. 단, 담임목사의 청빙, 신임투표, 연임, 해임 및 권징에 관한 안건은 담임목사가 사회를 맡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혹은 담임목사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사회를 선출한다.

#### 4. 교인 총회의 할 일

##### (1) 담임목사의 청빙, 신임, 연임, 해임 투표

담임목사의 청빙, 신임, 연임 및 해임 여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담임목사의 청빙은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과 신임과 연임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교인총회의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담임목사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 (2) 교인 총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 (운영위원) 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교인 총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 위임 및 해임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 (3) 각종 예산과 결산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 (5) 감사의 보고 사항

##### (6) 교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

##### (7) 교인의 권징

##### (8) 기타 안건

#### 제 23 조 (운영위원회)

##### 1. 회원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각 부 부장 및 구역장으로 구성한다.

##### 2. 사회

운영위원회의 사회는 담임목사가 맡는다. 단, 담임목사의 신임투표, 연임, 해임 및 권징에 관한 안건은 담임목사가 사회를 맡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혹은 담임목사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사회를 선출한다.

##### 3.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 4.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

##### (1) 교회 정관 관련 사항의 개정안 심의

##### (2) 권징 사항 심의

##### (3)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및 의결

##### (4) 교회 예결산의 심의



- (5)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 (6) 각 부서의 보고 청취
- (7)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제 24 조(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 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재정**

**제 25 조 (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각종 헌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2.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3.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그 전월의 재정 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세무법상 501(c)(3) 및 170(c)(2)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건과 주정부가 교회에 요구하는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는 책임을 진다.
6. 교인은 개인의 헌금 내역과 액수를 제외한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재정부장 혹은 재정부원의 입회 하에 열람할 수 있다.
7. 각 개인의 헌금 내역과 액수는 재정부 외는 열람할 수 없다.
8. 재 정부는 타인의 개인 헌금 내역과 액수를 담임목사, 부교역자, 성도, 교회 내/외부인을 포함하여 본인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전달할 수 없다. 개인의 헌금 내역은 재정부 내에서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며 목회자는 개인의 헌금 여부와 내역을 알 권리가 없다.

**제 26 조 (감사)** 교회 재정의 운영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를 1 인 이상 둔다.

1. 감사는 운영위원회 참석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 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 활동은 매년, 혹은 일 년에 2 번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교인 총회에서 그 결과를 연 1 회 보고한다.

제 27 조 (재산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교회 중요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폐기, 용도 변경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발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인 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기부를 통한 중요 재산 취득은 운영위원회 3분의 2 의 찬성으로 실행된다.
3. 교회의 중요 재산은 모든 부동산 및 미화 10,000 달러 이상의 동산을 말한다.
4. 교회의 모든 유형재산의 등기는 New Life Korean Church of Champaign County 의 명의이어야 한다.

제 28 조 (예결산)

1.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당해 년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2.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 총회에서 확정한다.
3.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교인 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 29 조 (재정의 지출) 각 부서장은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지출 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부장이 집행한다. 단, 예산 항목 중 미화 200 달러를 초과하는 지출, 예산 항목 중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출, 또는 예산 외의 지출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출된 항목에 대하여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과반의 허락을 득하고 서면으로 사유를 남겨야 한다. 목회활동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 항목도 지출 방법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9 장 권징

제 30 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교인 중에 반 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손하고 교회의 덕을 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그를 권징해야 한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권징의 목적은 형제/자매가 바른길로 돌아오는 것이며 권징의 동기는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다.

### 제 31 조(권징의 절차)

권징 절차는 예수께서 권면하신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마태복음 18:15-20)

1. 권징을 할 만한 죄를 발견한 교인은 당사자에게 혼자 찾아가 권면한다.
2. 당사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인은 운영위원을 포함한 다른 교인 한 두 사람을 데리고 찾아가 권면한다.
3.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인은 운영위원회에 권징 안을 건의한다.
4. 운영위원회는 권징안을 심의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제외한) 임시 운영위원회를 연다
5. 임시 운영위원회는 그 사안이 권징의 대상인지 먼저 판단한다.
6. 권징의 대상이라 판단되면, 임시 운영위원회는 권징안을 회부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7.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권징의 종류와 실행 시기를 결정한다.
8. 임시 운영위원회는 권징 결과를 후보, 혹은 예배 광고, 혹은 (임시) 총회를 통해 알린다.
9. 이상의 각 과정은 임시 운영위원회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 제 32 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ex) 예배, 성찬, 모임 참여 금지
2. 해직: 직분자나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ex) 구역장직 혹은 부서장직 박탈
3. 출교: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박탈함과 동시에 모든 모임에 영구적인 참여 금지.

## 제 10 장 부칙

제 1 조(개정) 이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 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편적 성경의 원리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시행 세칙은 운영위원 과반의 동의로 정하거나 수정 및 폐지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시행 세칙은 정관에 첨부하여 함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경과조치) 활동교인 요건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등록교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교인은 활동교인 자격요건 중 새가족교육 이수에 대한 요건을 면제한다.

이상의 정관 조항들은 2022년 4월 17일부로 발효된다.